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차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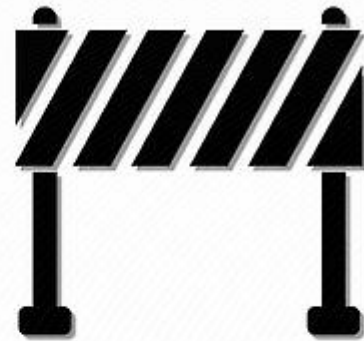
정신장애인의 주거

자립?

독립?

무장애주택?

연합뉴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인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생활 공간은 물론,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없애자는 뜻인데요.

YONHAP NEWS AGENCY

샘솟는 집 회원들의 의견

- “동네 사람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살 수 있어요.”
- “글쎄요.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집이 필요하겠죠? 나머진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 지역사회에 살면서 소외되어 고립되지 않도록 신경써주는 것이 필요해요.”

정신장애인의 주거

자립은 반드시 필요한가.





자연요양원



정신장애인의 주거

정신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주거지에 따른 치료서비스는 필수적인가?

정신장애인의 주거

훈련시설 vs 집

치료권 vs 인간으로서의 주거권

일시적 주거지 vs 영구적·안정적 주거지

배경

1)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증대

- 입원 입소자 중 50대 이상 62.5%, 지역사회등록자 중 50대 이상 44.7%
- 소득>의료>고용>주거 vs 주거>소득>고용>의료
- 향후 살고 싶은 주거 유형의 88.5%가 일반주택

2)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인

- 지역사회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불안정거주비율 10.6%
- 주거복지 이용률 20.3%
- 공공임대주택 이용률 5.1%

배경

3) 반복되는 입원과 입소, 열악한 주거환경

- 공동생활주택의 한계
- 정신질환으로 장기입원한 환자들 중 44.9%는 거주지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함

4) 자립생활 유지의 어려움

- 퇴원 1개월 이내 재입원 중증정신질환자 39.2%
- 퇴원 다음날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재입원 하는 경우 28%
-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

지원모형

1) 시대적 흐름/지원모형의 변화

미국	19세기 초반	1950-1970	1980-
	수용소 생활모델	직선적연속체 모델	지지적 지원주거 모델
한국	-1990	1990-2020	2020-
	수용소 생활모델	직선적연속체 모델	지지적 지원주거 모델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특징

- 정신질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퇴원하면 입소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을 받고 더 높은 독립적 요소를 강조하는 단계의 주거시설에 입소하여 독립주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치료를 위한 수용시설(병원, 요양원), 중간집(halfway house), 그룹홈(group home), 24시간 감독주거(23-hour supervised community residence), apartment treatment
- 장점 : 전문가들이 함께 상주하면서 주거와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됨, 주거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높음, 치료와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
- 단점 : 실제 현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힘들. 주거지를 계속 이동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스트레스가 높음. 대체로 지역사회와의 분리 현상 발생, 임시적 거주형태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개념

-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실무자 수퍼비전, 제한성이 있는 여러 주거환경
- 더 제한적인 수준에서 덜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됨.
- 각 환경의 참여자들은 임상적 안정성과 기능적 능력의 면에서 유사. 졸업하여 연속체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 향상된 모습을 보여야 함.
- 기능이 퇴보하여 재입원하게 될 때, 다시 제한 수준이 가장 높은 연속체부터 시작
- 궁극적 목적은 독립형 주거로의 이동이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

제한의 정도에 따른 연속체



우리나라의 주거 연속체

직선적 연속체 모형					
A	B	C	D	E	F
병원	단기거주	입소시설	주거시설	공동생활가정	독립주거
요양원					
1,273개소 (80,012병상)	4개소	22개소 (462명)	121개소 (986명)	30개소 (90명)	
59개소 (13,920병상)					

- * 정신의료기관 83.7%
- * 정신요양시설 14.2%
- * 입소시설·주거시설 2.1%

직선적 연속체 모형

-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영역에서는 직선적 연속체 모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하지만 A(병원, 요양원)에 많은 정신질환자가 집중되어 있고 B, C, D, E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프라(인력, 시설수)로 운영되고 있어 다소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엄밀히 따지자면 직선적 연속체 모형도 제대로 구조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직선적 연속체 모형을 균형 있게 갖춘다고 하더라도 선행경험에 의해 도출된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함.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

-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대안으로서 제시됨.
-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신장애인, 가족,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어떤 주거가 적당한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결정하는 것 (남기철, 2011)
-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Case Management와 같은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의 확대가 기반이 됨.
- 장점 : 바로 주택으로 입주함.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함. 지역사회통합, 안정적 거주지 제공
- 단점 : 다소 이상적이며 많은 인프라가 필요함.

배경

- 정신장애인도 일반주택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함.
- 사생활과 자율을 중시
- 지역사회와의 주거공간
- 입주기준이 아닌, 정신건강서비스를 희망
- 소득의 부재를 거주지 확보의 장애로 인식
- 주거공간 : 안전, 영구적, 쇼핑, 서비스, 교통
- 직원들의 훈련

지지적 주거접근 모형

- 1980년대 후, 1990년대 초부터 직선적 연속체 모형의 한계로 시작
- 시설이 아닌 '집'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제공
- 소비자의 선택, 조절, 자조, 역량강화 강조
- 전문적이고 치료적인 개입 최소화
- 주택과 서비스의 분리
- 세 가지 요건 : 소비자의 선택, 정상적이고 통합적인 주거, 탄력적 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요소

- 단지 주거치료 환경이 아닌 '집'
- 배치가 아닌 선택
-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역할보다는 세입자나 세대주인 보통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
- 직원에서 클라이언트로 통제 소재 전환
- 동질 장애 그룹을 묶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통합
- 과도기적 환경이 아닌 영구적 환경 내에서 지원
- 융통성 있는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

지원주택의 효과 및 성과

- 시설이 아닌 '집'으로서 경험
- 음성증상 감소, 정신과적 증상 안정
- 자기효능감이 높음
- 개인적인 역량강화,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변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변화
- 지역사회통합

주거우선(Housing first)

- 선결 조건 없이 원하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 가능한 빨리 주거를 제공하고 그 후에 문제 해결 시도
- "소비자들은 술을 마실지 말지, 약을 복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들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그의 주거권이 위협받지 않아야 하며, 선택에 관계없이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차이

- 서울 : 주택필요 ↑ 서비스 필요 ↓
- 지방 : 주택필요 ↓ 서비스 필요 ↑

공공주택

- 등록회원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당첨되는 공공임대주택

1.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

▪ 국민임대

- 우선공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갖춘 자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50㎡ 이하 주택 공급 가능)

▪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2019년 3인이하 가구 기준)

소득(70% 수준)	총자산	자동차
3,781,270원	2억 8000만원	2,499만원

1.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

▪ 영구임대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 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1순위 입주자격 부여

▪ 영구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2019년 3인이하 가구 기준)

소득(70%수준)	총자산	자동차
3,781,270원	1억 9600만원	2,499만원

1.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

- 주거약자용주택이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영구임대 주택을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의무건설하여 공급 [의무건설비율:수도권 8%, 수도권 외 5%]

“주거약자” 란?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를 판정을 받은 자

1.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

- **분양전환대상 공공임대주택(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등)**
 - 특별공급 : 장애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에 한해 특별공급 대상 내 2순위 자격으로 공급

* 타 자격요건(무주택기간, 장애정도, 거주기간 등)은 추천기관인 시도지사에서 평가 함

** 건설임대주택 공급기준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전세임대주택 공급기준

■ 전세임대 공급기준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 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경우
(단,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 소유 시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2순위** : 1순위와 동일하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 전세임대 소득 · 자산요건(2019년 3인이하 가구 기준)

소득 70% 수준	소득 100% 수준	영구임대 자산기준
3,781,270원	5,401,814원	(총자산)1억 9600만원, (자동차)2,499만원

*근거 :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1212호)

3.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기준

▪ 일반주택 매입임대 공급기준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 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2순위 : 1순위와 동일하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 매입임대 소득 · 자산요건(2019년 3인이하 가구 기준)

소득 70% 수준	소득 100% 수준	영구임대 자산기준
3,781,270원	5,401,814원	(총자산)1억 9600만원, (자동차)2,499만원

*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1108호)

3.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기준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기준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청년이며, 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시,군 등 출신이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 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자

- 2순위 : 타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이며,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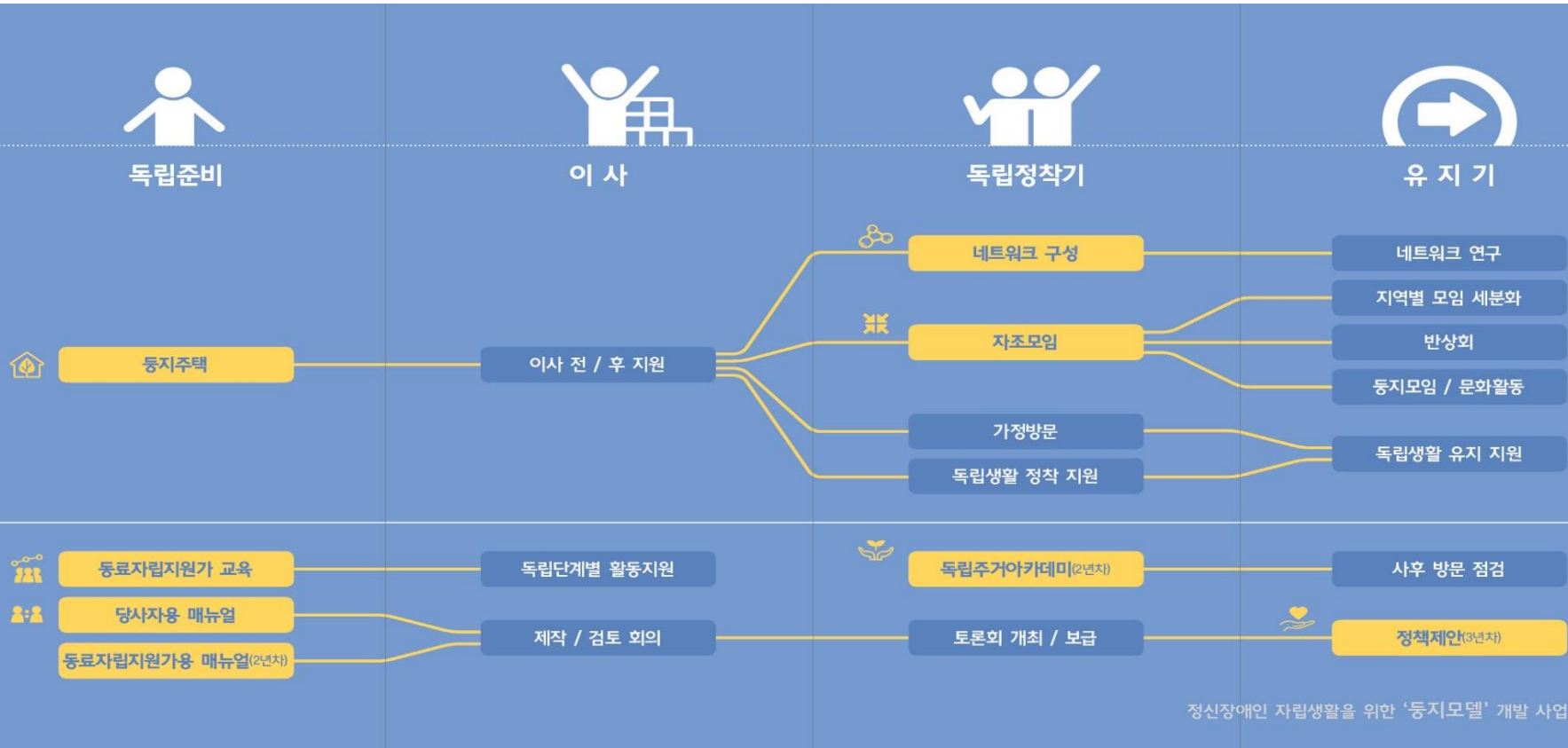
- 3순위 : 타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이며, 행복주택(대학생계층) 자산기준 충족 자

소득 70% 수준	소득 100% 수준	영구임대 자산기준	행복주택 자산기준
3,781,270원	5,401,814원	(총자산)1억 9600만원, (자동차)2,499만원	(본인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 미소유

서비스

- 개별화된 접근이 중요
- 각각의 너무나도 다른 '삶'

우리의 현실에서 지원방안은?



서비스

- 주거환경 구축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임차인의 권리 안내 및 조정
-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지원: 건강검진 등의 신체건강 유지, 체육시설 연계 등의 건강증진, 증상관리 등의 정신건강 유지 지원
- 일상생활: 집안일, 여가, 금전관리 등 일상 유지와 관련된 지원
- 사회생활: 대인관계, 취업지원 등 사회적 연결과 관련된 지원
- 자원연계: 공공 및 민간 자원 탐색, 안내, 연계
- 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24시간 연결망 구축
- 네트워크 연결: 직장동료, 이웃, 기관 회원, 지역사회 자원 등 지원체계 연결 및 구축

자립 초기 어려움

- 불안감
- 자립을 시작하게 된 계기 : 버림받았다는 생각, 거절당했다는 생각
- 가전제품 작동법 및 사용
- 식사 준비
- 집안일
- 시간 활용
- 주도적이지 못하고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
- 공과금 납부, 지출 관리
- 약물복용

자립 초기 어려움

- 불안감
- 상황 : 불안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함.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언급함. 행동이 위축됨. 생각이 많아지고 표정이 어두워짐.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무태도에 변화가 생김. 수면부족.
- 발생 원인 : 경험이 없는 일을 해보는 것에 대한 불안, 막연한 두려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발생, 환경의 낯설음, 가족과의 거리감 등
- 대처 :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준다.
자립을 축하하고 응원한다.
동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능한 자주 가정방문을 한다.

자립 초기 어려움

- 자립을 시작하게 된 계기 : 버림받았다는 생각, 거절당했다는 생각
- 상황 :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느낌. 가족 또는 시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함.
- 발생원인 : 스스로 자립을 원한 것이 아닐 때. 입소기간 만료로 자립했을 때. 가족간 갈등으로 인해 자립할 때.
- 대처
자주 만나고 방문한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한다.
관계를 늘리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
언제든 도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활용한다.

자립 초기 어려움

- 가전제품 작동법 및 활용
- 상황 : 단순 오작동을 고장으로 인식하고 불안해한다. 익숙한 기계가 아닐 경우 사용을 꺼려하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버튼의 위치나 모양이 바뀌어도 혼란을 느낀다.
- 발생원인 : 사용법 미숙지.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가 아닐 경우. 새로 구입한 최신의 전자제품일 경우
- 대처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또 반복!
자주 사용하는 기계의 버튼에 스티커로 체크
수시로 가정방문 하여 확인

자립 초기 어려움

- 식사 준비
- 상황 : 식사준비를 혼자 하지 못함. 매식으로 끼니를 해결함. 선호하는 음식만 섭취함.
- 발생원인 : 조리방법을 모름. 주방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워함. 용도를 모름. 경험해본적이 없음. 가족이 전적으로 담당함.
- 대처
 - 반찬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 연계
 - 밀키트 같은 간편식
 - 반찬가게를 지역자원으로 활용
 - 매식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므로 횟수를 정하는 등의 지원
 - 성장의 기회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
 - 한편으로, 개인의 선호도도 동시에 고려해야함.

자립 초기 어려움

- 집안일
- 상황 : 청소, 설거지, 세탁, 음식물 관리 등을 잘 하지 못함.
- 원인 : 경험이 없어서. 언제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름.
- 대처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함께 실행.
반복해서 숙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방법임.

자립 초기 어려움

- 시간 활용

- 상황 :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남. 시간을 활용할 방법이 없음.

- 원인 : 혼자 다녀본 경험이 없음. 여가, 문화, 취미 활동을 제한적으로 경험함.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음.

- 대처

여가시간 활용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닌 삶의 활력을 주는 요소
산책로, 카페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다.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자원을 연계한다.

주말에 할 수 있는 종교활동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기구 구입

자립 초기 어려움

- 주도적이지 못하고 주변의 평가에 휘둘리는 삶
- 상황 : 주변사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좌절함(식사준비, 청소 등). 타인의 말에 따라 행동함(약물을 임의로 줄인다든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함).
- 원인 : 타인에게 의존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변인물과의 관계가 잘 지속되기를 희망함.
- 대처
주변 사람(가족이나 직원)의 기대치를 조정한다.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한다.

자립 초기 어려움

- 공과금 납부, 지출 관리
- 상황 : 지출범위를 알지 못함. 잘못된 지출을 하고 있음.
- 원인 : 경험부족. 스트레스로 인한 구매
- 대처
은행에 함께 방문.
지출을 내역별로 분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본인의 지출이 잘못되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도 필요

자립 초기 어려움

- 약물복용
- 상황 : 임의로 조정함. 복용하지 않음.
- 원인 : 실수로 잊음. 의도적으로 중단함.
- 대처
규칙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개인의 방법 강구
변화에 예민함이 필요

자립 유지기의 어려움

- 초기의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1년 안에 대부분 해소되고 안정됨. 물론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음.
- 유지기에 접어들면 나타나는 감정은,
- 외로움
-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부담감
- 이웃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확장
- 편견에 대한 인식

정리

-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일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가족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다.
-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 되어야하는 서비스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일상의 것이다.

참고문헌

- 백현정(2013), 정신장애인과 주택, 도시와 빈곤, 제104호
- 양옥경(2006), 「지역사회정신건강」, 나남
- 중앙정신보건사업단(2011), 「중앙정신보건사업단 사업보고서」
-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2019) LH
- www.kpr.or.kr



정신장애인 희망클럽

www.fountainhouse.or.kr

수고하셨습니다.